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59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15.

발 의 자 : 배준영 · 김위상 · 김기웅
김 건 · 추경호 · 서명옥
김승수 · 임이자 · 권영세
이종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, 그 제한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공기업·준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도 별도의 처분 없이 동일하게 참가가 제한되도록 법률에 직접 명확히 규정함으로써, 공기업·준정부기관 운영의 신뢰성과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입찰참가자격의 엄정한 제한을 확립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장이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, “제한할 수 있다”에서 “제한한다”로 변경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의무성을 강화함(안 제39조제2

항).

나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, 그 제한 기간 동안 공기업·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도 별도의 처분 없이 참가자격이 제한되도록 함(안 제39조제3항 신설).

다.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의 관련 조문을 본 개정에 맞추어 인용조문 번호를 정비함(부칙 제2조).

라. 신설로 인한 조문 순서를 정비하도록 함.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한할 수 있다”를 “제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공기업·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 제한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3제3항 중 “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3항”을 “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9조(회계원칙 등) ① (생략)	제39조(회계원칙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(이하 “계약질서위반행위”라 한다)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(이하 “부정당업자”라 한다)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<u>제한할 수 있다</u>. 다만,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1. ~ 2. (생략) <u><신설></u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한한다.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③ 「<u>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</u>」, 「<u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제2항에 따

③ (생략)	<u>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</u> <u>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공기업</u> <u>· 준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</u> <u>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이</u> <u>제한된다.</u>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---------------	--